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203
2026.11.16.



EU CBAM 배출량 검증, 이제 국내서도 가능

[이주의 초점]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 수출기업 검증비용 부담 완화 기대 (4p)

[위클리뉴스]
2026년 3분기 수출 72.3% 증가… 상위 10대 기업 수출 비중이 60.9%
단감은 중국, 감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진출 (7p)

[오피니언: 美 CBP 리스크]
"美 통관 끝나도 관세 위험은 계속된다"
CBP 사후검증 절차와 관세 위험관리 (13p)

[판례 동향]
품목분류에서 HS 원문 해석이 가지는 중요성
겉껍질을 제거한 엠머밀 심사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23p)

[품목분류 동향]
즉석 인화사진기의 품목분류: 제9006호와 제8525호 사이에 선 즉석 사진기 (34p)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1월 16일(통권 제220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EU CBAM 탄소배출량 검증,
이제 국내서도 가능

07 Weekly News

오피니언동향

13 **美 CBP 리스크**

美 통관 끝나도 관세 위험은 계속된다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관세행정실무해설

21 **질의응답사례**

한·EU FTA 원산지 판정

판례동향

23 **관세판례해설**

품목분류에서 HS 원문 해석이 가지는 중요성

김 민 주 부산세관

품목분류동향

34 **품목분류해설**

즉석 인화사진기의 품목분류

김 성 채 PwC 관세법인

EU CBAM 탄소배출량 검증, 이제 국내서도 가능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검증기관 최초로 EU 회원국 인정기구로부터 검증기관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감한 생산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2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내 검증기관이 EU의 탄소배출량 검증 요건을 충족해 공식적인 검증 자격을 확보한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검증기관 인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탄소배출량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검증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내외 제품에 동등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으로 2년여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분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EU 수입업자는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증서 구매비용이 우리 수출기업에 전가되거나 수출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U 수입업자가 신고할 때 필요한 실제 탄소배출량은 EU 회원국 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검증받은 배출량이 없는 경우 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기본값이 적용된다. 즉 실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아야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 기반 마련해도 수출기업 부담 지속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반면, CBAM은 제품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뿐 아니라, 생산에 투입된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까지 반영해 제품별 고유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을 산정해야 한다. 이처럼 CBAM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이 다른 만큼 제품 생산공정과 투입원료 등을 고려해 별도의 탄소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CBAM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국표준협회는 CBAM에 대응하는 기업은 먼저 자사 제품이 EU 수출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 중에 CBAM 규제 대상의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생산공정 내 투입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원을 확인하고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CBAM 영향,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

EU는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CBAM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과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무상배출권 할당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감소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BAM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영향이 2031년부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EU가 역내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인 만큼 CBAM 적용 제품에 대한 탄소비용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별도의 대응이 없을 경우 CBAM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對EU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약 0.9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적용 품목의 對EU 수출물량 감소율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에 머물지만, 2031년부터 감소폭이 확대돼 2034년에는 최대 1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31년부터 무상할당률이 절반 이상 감축된다는 점을 반영해 2028년~2030년과 2031년~2023년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다.

한국산업은행이 2026년 2월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BAM 시행에 따른 영향은 국내 철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우리나라의 CBAM 대상 품목 중 對EU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2025년 우리나라의 對EU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약 38억 8,186만달러이며, 철강 수출액이 약 34억 2,610만달러로 전체의 88.3%, 알루미늄은 약 4억 5,544만달러로 11.7%를 차지했다.

한국의 對EU CBAM 품목 수출액

연도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2024년	4,186,686	384,686	1,956	1	2	0
2025년	3,426,102	455,440	321	0	0	0

단위: 1,000달러(출처: 한국산업은행)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서 2023년 4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의 CBAM 대상 물품 對EU 수출량은 539만톤으로 수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수출품에 포함된 추정 내재배출량은 역외국 중 7위(1,400만 tCO_2e)를 차지했다.

CBAM이 본격 시행된 첫 해인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연간 신고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EU 수입업자는 이 기한까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과 CBAM 인증서 수량 등을 신고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도 EU 수입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김다솔 기자|

2026년 3분기 수출 72.3% 증가했지만 상위 10대 기업 수출 비중이 60.9%

수출기업 수는 0.3% 상승에 그쳐

올해 3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2.3% 증가했지만, 수출기업 수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수출이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3,186억달러다. 수출기업 수는 6만 9,988개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액은 2,031억달러로 25.0%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103.5%)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10%대(각각 12.8%·10.7%) 증가에 머물렀다. 모두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수출이 늘었으며, 중견기업은 소비재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했다. 대기업은 수출기업 수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수출액은 크게 늘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60.9%로 전년 동기보다 20.3%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수출액의 79.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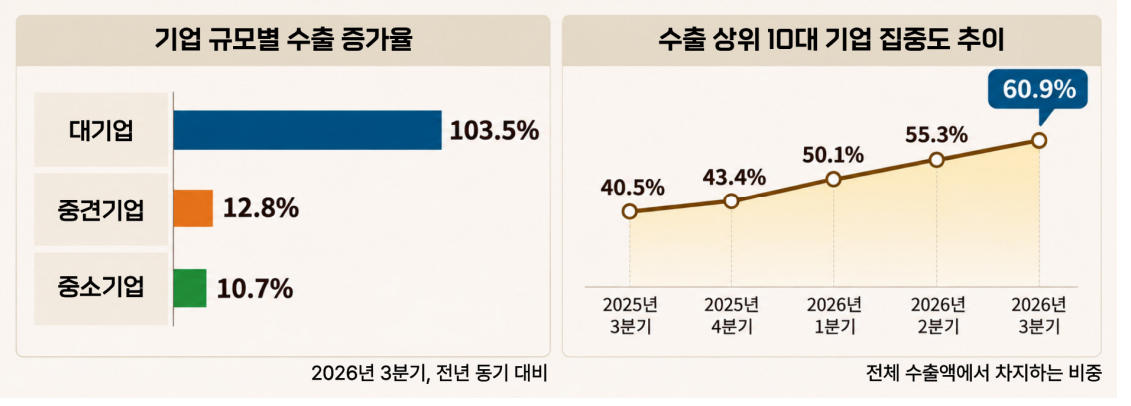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기전자 수출액은 2,06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6%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기기 등 IT 관련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자본재 수출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감소로 소비재 수출은 1.7% 줄었다. 주요 국가·권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13.2% 증가했으며, 미국(98.9%)과 동남아(93.9%)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중동(△2.7%)과 독립국가연합(△25.4%) 수출은 감소했다. | 김성은 기자 |

FTA 피해보전직불금 올해는 '염소고기'···11월 중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에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살피고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691호 농가로 총 49억 7,200만원의 직불금이 11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으로 지원한도는 농업법인이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도별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 통계

구분	2022	2023	2024	2025
중량	3,278	5,930	8,126	10,759
금액	3,308	4,223	5,052	6,641

단위: 톤, 1.000달러(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농식품부는 염소고기 총 수입량이 2014년 1,436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10년 사이 5.7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이 호주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염소고기는 2022년엔 3,278톤·3,308만달러에서 2025년에는 1만 760톤·6,641만달러로 중량은 3배, 금액은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KREI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은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총수입량이 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직불급 지급 관련 농가별 확정 금액 및 지급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솔 기자 |

단감은 중국, 감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진출

한국산 단감이 17년간의 검역협상 끝에 중국의 수출길이 열렸다. 첫 수출 물량인 약 19.6톤이 중국 상하이를 향하면서 한국산 단감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여기에 제주산 감귤은 검역협상 타결 8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올랐다. 한국산 과일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6일 전국 단감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최대 단감 주산지 중 하나인 경남 창원시에서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적된 단감은 약 19.6톤으로, 엄격한 검역기준을 갖춰 선별·포장돼 부산항을 출발해 11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후 상하이의 고급 유통매장 중 하나인 '시티슈퍼(City Super)' 등에서 프리미엄 과일로 선보인다.

한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 검역협상은 2008년 시작돼 17년간 이어졌다. 2025년 11월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시행하고, 5월엔 경남 지역에 수출단지를 5곳 지정하는 등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인 2026년 10월 30일에는 중국의 최종 수출 승인이 완료됐다.

그동안 한국산 단감의 주요 수출국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었다. 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한국산 단감 수출량(3,217톤)의 약 80%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 집중돼 있다. 2024년(3,068.3톤, 585만 4,100달러) 대비 2025년(3,217톤, 580만 400달러) 수출물량은 증가했지만, 금액은 줄었다.

제주산 감귤의 경우 농식품부는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12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감귤과 함께 키위·무 등 제주산 농산물 합동 선적식이 진행됐다. 11월 중순에는 39.2톤의 감귤이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만다린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농식품부는 2026년 2월 감귤류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선정해 한 달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검역본부는 6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수출검역단지를 지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산 감귤 수출이 타결된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으로 5개국이 됐다.

| 김다솔 기자 |

산업부, CPTPP 원산지규정 등 주제별 세미나 진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주요 내용을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릴레이 세미나가 내년 1월까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가 11월 11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 관세와 원산지 규정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등 폭넓은 통상규범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발효했으며,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9월 28일 협정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CPTPP 릴레이 세미나 일정

일자	주요 강의 내용	일자	주요 강의 내용
11.11.	협정 총론·분쟁해결·예외	12.9.	국영기업·정부조달·지식재산권
11.18.	디지털 무역·노동·환경	12.16.	서비스·투자·금융
11.25.	상품 시장접근·원산지	12.30.	협정 운영
12.2.	위생·식물위생조치(SPS)	2027.1.6.	통상 전문가 좌담회

이번 세미나는 CPTPP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협정 총칙을 주제로 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제1장), 분쟁해결(제28장), 예외 및 일반규정(제29장)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세미나는 2027년 1월 6일까지 총 8차례 열린다. 서울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motir.go.kr)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leek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중국 올해 무역흑자 1조달러 돌파… 지난해보다 8% 증가

중국의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교역이 급증한 가운데 ASEAN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도 넓어지고 있다. 11월 10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0월 중국의 상품 수출입액은 44조 8,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 수출(25조 9,900억위안)은 17.6%, 수입(18조 8,200억위안)은 23.6% 늘었다. 10월 수출입액은 4조 8,7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2% 늘었다.

달러 기준 1~10월 상품무역 흑자는 1조 425억 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 중국의 누적 상품무역 흑자가 2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1조달러 선을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제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품목별 통계에 따르면, 1~10월 중국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9%, 저장장치 부품 수출액은 1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적회로 수입액도 58% 늘었다. 집적회로 수출 물량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출액은 두 배 이상 늘어 가격 상승이 교역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상대국도 다양해졌다. 중국의 ASEAN·중남미·아프리카산 수입액은 1~10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ASEAN과의 교역액은 7조 6,8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4.2%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수교 중인 아프리카 53개국에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중국의 10월 對美 상품무역 흑자는 327억 1,000만달러, 對EU 흑자는 333억 6,000만달러다. 1~10월 누계 흑자는 미국이 2,665억 1,000만달러,

EU가 3,106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대규모 무역흑자는 미국과 EU의 對中 통상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월 9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 추가관세의 부과 유예가 11월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2개월 연장됐다고 공고했다. 다만 10% 추가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도 관세와 무역 불균형 문제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美·中 관세 유예가 이어지고 있지만, 1조달러를 넘어선 무역흑자와 관세 유예 종료 이후 양국의 대응은 향후 통상관계의 변수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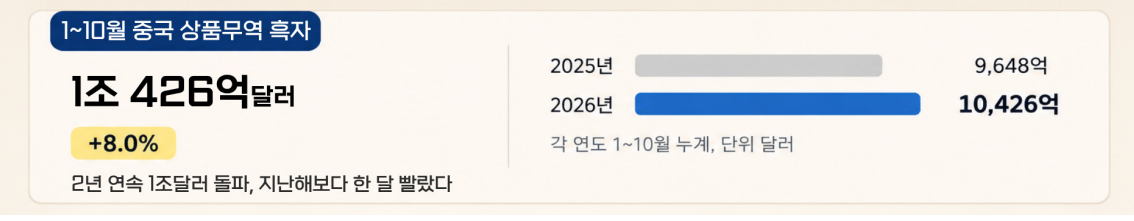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도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사상 첫 1조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이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 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363억 3,700만달러다.

11월 1~10일 수출액은 334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1.9% 증가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166억달러로 331.2% 늘었으며, 전체 수출의 49.7%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하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상품수출 1조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된다. | 김성은 기자 |

美 통관 끝나도 관세 위험은 계속된다

CBP 사후검증 절차와 관세 위험관리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Ⅰ. 美 CBP, 사후검증 강화 기조 확대

미국으로 수출 통관 이후의 검증을 이해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발 수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통관 단계의 선별뿐 아니라 통관 이후의 검증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제조업정책국은 2018년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던 경로가 저관세 국가를 경유하는 경로로 바뀐 현상을 '대재편(Great Reallocation)'이라 부르고, 이 과정에서 각국의 가공·물류 거점이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국적 표시를 부여하는 분산형 체계로 발전했다고 봐 이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로 명명했다.

여기서 겨냥하는 대상은 수입신고상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원산지·소유·자금·부품·생산 단계에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중국 연관 상품(China-linked goods)'이다. 재라벨링, 재포장, 재송장 발행, 경미한 가공처럼 실제 경제적 원산지를 신고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관세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본다.

보고서는 40여 개 국가·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고, 한국은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가장 앞선 '**1단계**(Tier 1, Diversified Scale Leaders)'에 포함됐다. 이 **단계에 속한 국가·지역은 중국 연관 물량의 절대 규모가 크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對美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지역에서는 우회 위험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내재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군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둘째, 검증에 사용될 정보는 신고서류가 아니라 한국 본사와 공급사에 있는 공급망 정보다. 셋째, 이러한 정보는 통관 단계의 선별뿐 아니라 통관 이후의 질의와 감사에서도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정 수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사후 검증, 위반 시 책임과 선제 대응의 순서로 통관 이후의 위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글 전반에서 강조하려는 점은 **통관 이후의 위험관리가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신고 후 최소 5년간 지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관리 체계**라는 것이다.

Ⅱ. CBP의 사후 검증 수단

미국의 사후 검증은 크게 세 층으로 이뤄진다. 개별 수입신고 건(Entry)의 신고 내용을 묻는 정보요청서(CF-28, Request for Information)와 그에 따른 조치통지서(CF-29, Notice of Action), 수입자의 내부통제 전반을 보는 감사, 그리고 반덤핑·상계관세(AD/CV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회피나 FTA 특혜와 같은 특정 쟁점을 다루는 별도 절차다. 이 가운데 기업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수단은 CF-28이며, 향후 검증 방향도 CF-28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CF-28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CF-28과 CF-29

CF-28은 CBP의 수입 전문가(Import Specialist)가 신고된 가격, 분류, 원산지 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할 때 발급하는 정보요청서다. 수입자는 물품의 신고, 분류, 평가에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할 책임을 지므로, CF-28은 그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요구로도 기능한다.

응답 기한은 서식에 기재된 일자를 따르며 통상 30일이 부여된다. 연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사유와 희망 기한을 밝혀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의 CF-28 동향에 따르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CBP는 보유한 정보를 기초로 CF-29를 통해 분류, 가격, 원산지 등의 변경과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CF-29는 예정된 조치를 알리는 경우와 이미 취해진 조치를 알리는 경우로 나뉘며, 예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통상 20일 이내에 증거와 반론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한 역시 서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치가 확정돼 청산에 반영되면 구제 수단은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이의신청(Protest)으로 좁혀진다. 미응답이나 부실한 응답은 이후 미국 연방법전 제19편 제1592조(19 U.S.C. §1592)에 따른 판단에서 합리적 주의가 부족했다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검증은 개별 수입신고 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검증 통지문에는 검증 결과가 동일 물품과 미청산 수입신고 건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19 CFR §10.1026).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CF-28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원산지 판단이 같은 공급사와 같은 품목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로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적용 관세가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추징액이 개별 수입신고 건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CF-28의 최초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CF-28 질의의 전형적 내용과 본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

CF-28의 질의 항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원산지를 쟁점으로 하는 질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는 실제 CBP의 요청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CF-28의 실제 질의는 서식에 기재된 문구, 특히 공식 메시지(Official Message)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에서 보듯 자료의 대부분은 미국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와 공급사에 있다.

CF-28(원산지 쟁점) 주요 질의 항목

질의 영역	예상되는 요청
제조 공정	공정 흐름도, 공정별 수행 장소, 설비, 인력, 외주 공정 여부
부품, 원재료	자재명세서, 부품, 원재료별 원산지, 공급사, HS Code, 구매 송품장
원가, 부가가치	원가 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정별 부가가치
생산 기록	작업지시서, 생산, 재고 수불 기록, 설비 가동 기록
공급사, 거래 관계	공급사 인보이스, 계약서, 지급 증빙, 소유, 특수관계
운송, 경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 선적, 경유 기록, 수출신고 자료
신고 판단 근거	분류 검토서, 제품 사양서, 원산지 판단 검토 자료, CBP 사전판정

3. CF-28의 대응 원칙

CF-28은 질문 범위에 맞춰 답하는 것이 권고된다. 요청된 수입신고 건과 항목에 한정해 증빙과 함께 답하며, 요청 범위를 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CBP의 검토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 단, 질문에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답해야 한다. 허위 진술은 §1592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자료 간의 정합성도 중요하다. 송품장(Invoice),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공급사 증빙, 이전에 CBP에 제출한 신고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추가 질의의 근거가 된다. 내부적으로 정보 불일치를 조정하고 정정 사항이 있으면 답변서에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CF-28을 수신한 뒤 신고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사전 자진신고(Prior Disclosure)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오류, 특히 부족세액이 드러나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향후 검증의 방향: 공급망 정보에 기초한 검증

앞서 살펴본 정책 환경을 종합하면 CF-28을 비롯한 향후 사후 검증의 중심은 가격이나 분류의 단순 확인에서 공급망 정보에 기초한 비특혜 원산지 검증으로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원산지가 곧 관세액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의 곱이며 세율은 HS 분류와 비특혜 원산지로 정해진다. HS 분류는 제품 사양과 CBP의 사전판정(Ruling)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는 현행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구조에서는 원산지가 신고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판단되는 순간 적용 세율 자체가 달라진다.

둘째, **비특혜 원산지는 사실관계 증빙으로 판단된다.** FTA 특혜 원산지에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라는 정형화된 판단 틀이 있으나, 비특혜 원산지는 한 국가에서 이뤄진 가공이 물품에 새로운 명칭·성질·용도(name, character or use)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이 사안별이므로 증빙은 증명서 한 장이 아니라 공정, 부품 구성, 원가, 생산 기록 등 사실관계 전체로 구성되며, 그 자료는 대부분 한국 본사와 공급사에 있다.

셋째, CBP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탐지 체계인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는 소유관계, 경로 이력, 생산능력 지표를 통합해 분석한다. 행정명령 제14411호 '관세 집행 강화'와 CBP의 '사전입법예고(ANPRM,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해외 수출서류의 사전 제출과 제조자 식별 체계 개편 등 수입단계의 정보 제출 확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축적된 이러한 정보는 선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신고된 원산지와 실제 공급망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기준으로도 쓰일 수 있다.

넷째, 보고서가 현행 원산지 판단 기준을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평가하며 의회에 원산지 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는 점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 현행 실질적 변형 법리 아래에서 사실관계 증빙으로 방어해야 한다. 입법 이후에도 증빙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가 경기 지역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HS 제8542.39호)를 중국산 우회수출의 잠재적 경유지로 예시를 든 것처럼 중국 연관 투입물의 비중이 높거나 단순 조립, 마무리 공정에 의존하는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우선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핵심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되고 이를 생산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같은 질의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검증 시점이 신고 후 수개월에서 수년 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5. 감사와 기타 검증 수단

집중심사(FA, Focused Assessment) 등 감사는 수입 관련 내부통제를 평가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포괄적 감사다. CF-28이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질의라면 감사는 수입 업무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표는 주요 수단을 대상과 방법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감사 및 검증 수단

수단	주된 대상	방법
Focused Assessment(FA)	위험 기반으로 선정된 수입자	사전조사(Pre-Assessment Survey)로 내부통제와 절차를 파악하고, 통제가 취약하면 준수 테스트(Assessment Compliance Testing)로 실거래를 검사
Quick Response Audit(QRA)	특정 쟁점에 위험 신호가 있는 수입자	특정 품목, 기간, 쟁점으로 범위를 한정한 단기 감사
EAPA 조사 (19 U.S.C. §1517)	AD/CVD 적용 품목의 회피(환적 포함) 혐의가 있는 수입자	제보(경쟁업체 등)로 개시되며 공급망과 생산 실체 확인
FTA 원산지 검증 (한·미 FTA)	특혜관세를 청구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협정에 따른 서면 질의와 현장 방문 등

Ⅳ. 위반 시 책임과 선제 대응

1. §1592의 책임 구조

19 U.S.C. §1592는 위반 유형을 사기, 중과실, 과실의 세 단계로 정한다. 금전벌 한도는 과실이 손실세액의 2배, 중과실이 4배, 사기가 국내가액이며, 손실세액이 없는 경우 과실은 과세가격의 20%, 중과실은 40%를 기준으로 한다.

§1592 위반 유형별 금전벌 한도

위반 유형	일반 한도[§1592(c)(1)~(3)]	손실세액이 없는 경우
과실	국내가액과 손실세액의 2배 중 적은 금액	과세가격의 20%
중과실	국내가액과 손실세액의 4배 중 적은 금액	과세가격의 40%
사기	국내가액	국내가액

단순 사무 착오나 사실 오인처럼 과실에 이르지 않는 오류는 위반이 아니다[§1592(a)(2)].

다만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는 과실의 일부면 예외다. 푸무목분류, 가격, 원산지를 판단할 때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줄 근거 문서가 없으면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커진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소송에서 사기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중과실은 정부가 위반의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정부가 행위나 부작위를 입증하면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신고자가 입증해야 한다[§1592(e)]. 결국 근거 문서의 유무가 책임의 수준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

2. 집행 강화 흐름

행정명령 제14411호 '관세 집행 강화'(2026.6.3., 91 FR 35125)는 90일 이내인 2026년 9월 1일까지 벌금 감경 기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평가된 벌금의 50% 미만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한을 두고, 약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의 하한을 설정하며, 상습 위반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선제 대응: 오류 발견 시 기업의 대응 수단

선제 대응의 출발점은 오류를 어느 시점에 발견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다. 다음 표는 오류 발견 상황별 우선 수단을 정리한 것이다.

오류 발견 시 대응 수단

상황	수단	유의사항
청산 전, PSC 기한 내	사후정정신고 (PSC)	신고일 300일 또는 청산예정일 15일 전 중 빠른 날, 증액분은 전자이체(ACH, Automated Clearing House)로 납부
청산 전, PSC 기한 경과	사전 자진신고 (Prior Disclosure)	부족 납부와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 개시 전에 신고, 청산 연장은 승인되는 경우에 한함
청산 후 180일 이내, 과다 납부	이의신청 (Protest)	청산일 기준 180일, 기각 시 CIT 제소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이 권고된다. 먼저 **수입신고 건별 청산예정일과 사후정정신고**(PSC, Post Summary Correction) **기한을 월 단위로 점검하는 청산 일정표를 운영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가격 항목별로 반기 단위의 사후 점검을 실시해 표본 수입신고 건의 신고 내용과 증빙을 대조한다. 이전가격 정산 일정과 PSC 기한을 연동하고, CF-28 대응 매뉴얼에는 담당자, 본사 자료 경로, 30일 일정표를 미리 정해 둔다. 오류가 발견됐을 때의 보고 체계와 사전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도 함께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이뤄지는 한 계속돼야 하며, 점검 결과와 시정 이력 자체가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는 증거가 된다.

Ⅴ. 결론

통관 이후의 위험은 반출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진다. 미국은 신고를 수입자에게 맡기고 사후에 검증하는 체계이므로, 신고 시점에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사후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정정신고(PSC), 사전 자진신고, 이의신청은 각각 기한과 효과가 다르고,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청산일과 PSC 기한을 상시 관리하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가 통관 이후 위험관리의 기본이다.

우리 기업은 수출 전에 준비한 설계와 증빙으로 통관 단계의 소명을 뒷받침하고, 통관 이후의 검증에서 확인된 쟁점은 다시 수출 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 통관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신속한 통관에 그치지 않고, CBP가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통관 이후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통관 이후의 위험관리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관리 체계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한·EU FTA 제81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와 최종 물품 간에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제조를 거쳤다면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한가요?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 3.3에서 "부속서 3.2를 저해함이 없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을 고려할 때, 해당 물품이 한·EU FTA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서 나열한 가공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1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별한 단서 없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와 최종 물품 간 HS Code가 변경되지 않아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전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의 정확한 분류 및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실질적 공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출

EMS로 수출을 진행했을 때 수출적재는 어떻게 하나요?

⋯› 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돼야 합니다.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 경우 우편물품의 적재 확인방법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 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는 경우 다음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우편물품의 적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6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5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누리집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 내용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신 우체국 등으로 문의하면 세부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우체국으로부터 해당 수출 건에 대한 EMS 번호를 받아 확인 후 적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남성용 후리스(Fleece) 재질 의류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물품이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라면 제61류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으며, 방한 의류로 볼 경우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 〈중략〉 ···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에 해당한다면 제6101.30-1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에 해당한다면 제6114.30-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61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에서 HS 원문 해석이 가지는 중요성

겉껍질을 제거한 엠머밀의 심사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김 민 주 | 부산세관

Ⅰ. 들어가며

곡물은 가공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번호와 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이다. 같은 종류의 곡물이라도 탈곡만 거친 상태인지, 껍질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거친 상태인지에 따라 관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공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품목분류는 곡물의 수입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특히 겉껍질을 제거한 밀은 껍질을 제거하기 전 낟알의 형태가 유지되고 과피가 남아있더라도, 해당 처리가 관세율표상 인정되는 가공의 범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제1001호의 '밀'로 볼 것인지, 또는 제1104호의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볼 것인지로 나뉠 수 있다.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관세율표에서 사용하는 '껍질'과 '과피' 용어의 의미 및 제10류에서 제외하는 가공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2025년 7월 14일 결정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겉껍질을 제거한 엠머밀'을 제1104.29-9000호의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과피를 제거하기 위한 가공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에 과피가 남아 있으므로 제1001호(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세청은 껍질과 과피의 구별, 탈곡 이후의 추가 공정, 거래서류 등을 종합해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심사청구 결정문의 판단구조를 살펴보고, 곡물의 품목분류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관련 법령

■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HS 해설서 제10류 곡물 주 제1호**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 **HS 해설서 제10류 곡물 소호주 제1호**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을 말한다.

■ **HS 해설서 제10류 총설**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cereal grain)만을 분류한다(다발이나 이삭으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의 스위트콘은 제외한다) 채소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 **HS 해설서 제1104호 해설서**

11.04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중략>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형의 아침 식사용 식품은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한다.
(2) 귀리·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 이외의 어떤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 고운 가루 같은 낱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랙티퍼러스(bracteiferous)종 보리의 곡립은 그들의 껍질을 제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너무나 견고하게 곡물 입자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에 의해서는 껍질을 분리할 수 없고, 단지 잘게 부수는 것(분쇄)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제1003호의 해설서 참조)].
(4) 진주 모양인 곡물(주로 보리) : 즉,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물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것이다.
(5) 거칠게 빻은 곡물 : 즉, 이것은 단편으로 부수거나 절단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부순 곡물(groats)과 상이하다.
(6) 곡물의 씨눈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나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게 되며,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탈지(脫脂)시키거나 열처리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하거나 잘게 부수며(거칠게 또는 고운 가루로), 예를 들어 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타민류를 첨가하기도 한다.

Ⅲ. 결정분석

1. 사건 개요

쟁점물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엠머밀 파로’다. 청구법인은 2023년 11월 14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엠머밀 파로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물품 분석을 의뢰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대상물품을 ‘껍질이 제거된 낱알 상태의 엠머밀’로 봐, 제1104.29-9000호(기타 가공한 곡물)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보했다.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이탈리아 소재의 세 업체로부터 엠머밀 파로를 총 147건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서 결정된 제1104.29-9000호로 신고해 통관했다. 이후 수출자별로 각 1건씩, 총 3건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거부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피를 제거하기 위한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001호의 밀로 볼 것인지, 껍질을 벗기는 등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로 봐 제1104호에 분류할 것인지”라고 하겠다.

2. 용어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곡물의 구조와 가공에 관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격적인 쟁점 검토에 앞서, 주요 용어의 의미와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1) 비탈립성 곡물(Hulled wheat), 탈립성 곡물(Free-threshing wheat)

먼저 'EMMER WHEAT FARRO'라는 품명에서 볼 수 있는 파로(Farro)란, 고대 밀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고대 밀 '아인콘(Einkorn)'을 파로라 부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스펠트(Spelt)'를 파로라 부르며, 어떤 지역에서는 '엠머(Emmer)'를 파로라 부른다. 이 엠머(Emmer) 종의 밀이 이 사건 쟁점물품에 해당한다.

고대 인류가 처음으로 밀을 재배하기 시작했을 당시, 밀은 포영(glume)이 곡립에 단단히 결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탈곡 공정만으로는 겉껍질(husk, 외피)을 제거하기 어려워 탈곡이나 키질 외에도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서 껍질을 제거해야 했다. 다시 말해 가공의 효율성이 낮고, 추가가공 없이 곧바로 식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비탈립성 곡물(Hulled wheat)'이라고 하며, 엠머밀·스펠트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인류가 수렵·채집생활에서 벗어나 농경사회로 전환해가는 시대를 맞아, 농업 생산성과 곡물 가공에 대한 효율성이 점차 중시됐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껍질이 쉽게 떨어지는 품종을 점차 선호하게 됐고, '껍질 결합이 비교적 느슨해 탈곡 시 곡립이 바로 분리되는 형질을 가진 품종'이 선택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탈립성 곡물(Free-threshing wheat)'이라고 한다. 이들은 탈곡 시 이미 껍질이 없는 상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별도의 껍질 제거나 마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듀럼밀·쌀보리·쌀귀리 및 호라산밀이 여기에 속한다.

비탈립성 곡물&탈립성 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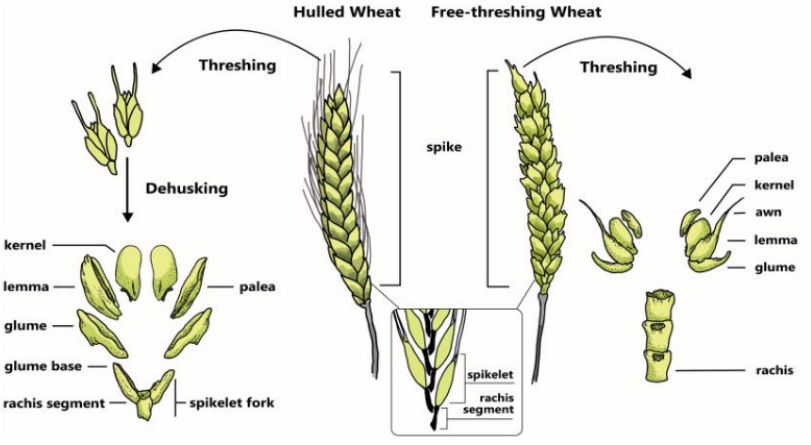

Figure 3. Hulled vs. free-thresing wheat. Domesticated wheats are either hulled or free-threshing. In hulled wheats (left), kernels are tightly enclosed in their glumes such that threshing results in intact spikelets. To release the kernels, they must be dehusked. Of the resultant chaff, spikelet forks are a tell-tale identifier of hulled wheats, commonly found in archeobotanical assemblages. In free-threshing wheats, threshing alone is sufficient to release kernels and chaff, which includes rachises indicative of free-threshing wheats.

출처: Oxford Academic Feature Article May 2021, vol.11, No.3

	 탈곡 후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	**Hulled wheat** **비탈립성 곡물**
		스펠트밀·겉보리(브랙티퍼러스종)·엠머밀 등
	 탈곡 후 껍질이 자연탈각된 상태	**Free-threshing wheat** **탈립성 곡물**
		호라산밀·듀럼밀·쌀보리·쌀귀리 등

2) 탈곡(Threshing), 키질(Winnowing)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에 따르면, '탈곡(Threshing)'이란 벼나 보리 등의 곡립을 볏짚이나 이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키질(Winnowing)'이란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볍고 불량한 종자는 날려버리고 무거운 종자만 채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탈곡'이란 벼·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일을 의미하고 '키질'이란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일을 의미한다.

탈곡·키질을 수행하는 모습



3) 껍질(Husk), 과피(Pericarp)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껍질'이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며, '과피'란 열매의 씨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곡물의 겉껍질에 해당하는 용어는 'Husk' 또는 'Hull'이며, 과피는 'Pericarp'라고 한다.

겉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Dehusk' 또는 'Hull', 'Dehull'라고 하고, 이러한 작업을 거쳐 껍질이 제거된 상태는 'Hulled'라고 표현한다.

영어 명칭

곡물의 겉껍질	Husk, Hull
겉껍질을 제거하다	Dehusk, Hull, Dehull
껍질이 제거된	Hulled
과피(果皮)	Perica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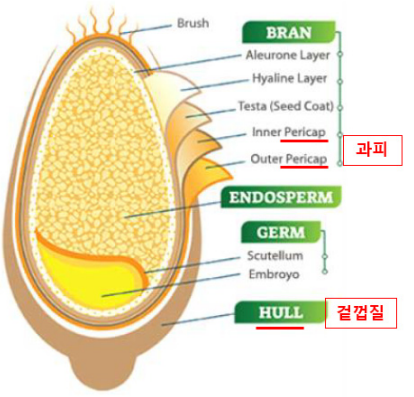

* Wheat and Other small Grain (MU Extension)

4) 사전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령에서 용어에 관한 정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또한 "법령상 용어 해석에 있어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일부 발췌

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용의 '제한'에 관하여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를 제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제한'을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로, '중단'을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의 사전적 의미와 '제한'이 '중단'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의 제한'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 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후략>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용어들은 주관적 해석이나 기술적 확장 없이, 사전적으로 확립된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3. 결정

청구법인은 제10류 주 및 제1104호 용어상 껍질은 '과피'를 의미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과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공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껍질이 단단하게 결착된 품종(Hulled wheat)이 아니며, 제1104호 해설서 (3)의 내용처럼 과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1001호에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에서는 껍질(Hull)과 과피(Pericarp)를 구분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이 없는 한 껍질이 제거된 곡물이면 제1104호에 분류되는 점, 관련 문헌에서도 엠머밀은 포영(낟껍질)이 단단히 결착된 밀로, 곡물을 얻기 위해서는 밀링 또는 두드리는 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조공정도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탈곡 이후 껍질을 벗기는 Dehusking, Hulling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공과정에서 사용된 기계의 종류(쟁점물품에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나 기술적 발전 수준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이 없고, **제10류와 제11류의 구분 시 곡물의 상태 및 가공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계의 사용 여부나 가공 방식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명세서를 보면 수출자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104.29호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은 그 밖의 가공을 한 밀에 해당해 제1104.29-9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봤다.

Ⅳ. 시사점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는 국문의 표현에 머물지 않고 HS 해설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품목분류에서 국문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와 HS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HS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정본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도 품명의 국문 우선 원칙을 정하면서 HS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HS 협약에 근거한 호·소호의 용어를 해석할 때는 국문 번역만으로 품목분류의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된다. 국문과 영문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영문 원문을 우선해 그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22322 판결도 HS 해설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HS 해설서의 국문 표현이 어떠한 물품이나 가공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번역문에 나타난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영문 원문의 문장구조와 용어의 의미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문 대조는 쟁점물품의 분류요건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제1104호 HS 해설서 (3)의 영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104호 HS 해설서

원문 해설서	Grain which has been **hulled** or **otherwise worked to remove wholly or partly the pericarp**.
국문 해설서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해당 원문을 살펴보면 접속사 'or'을 기준으로 제1104호에 분류되는 곡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껍질을 벗긴 곡물(Grain which has been hulled)'이고, 두 번째는 '과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Grain which has been otherwise worked to remove wholly or partly the pericarp)'이다.

즉,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제1104호에는 다음 곡물이 분류된다는 의미다.

> **①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 **② 과피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이러한 원문 구조에 비춰보면, 국문 해설의 "과피를 제거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근거로 '껍질을 벗긴 곡물+과피 제거'까지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문으로 비슷하게 표현되는 '껍질', '외피', '과피'를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제거된 부위와 법령상 가공의 의미를 잘못 대응시킬 수 있다. 품목분류의 출발점이 문언의 해석인 만큼, 번역된 용어의 의미가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원문 확인이 법적 판단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원문을 해석함에 있어 외국 관세율표와 분류사례는 국내 해석을 점검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외국의 관세율표나 품목분류 결정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HS 협약은 체약당사국이 공통된 호·소호와 해석 통칙 및 주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가 같은 문언을 어떻게 옮기고 적용하는지는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다. 특히 국문 표현의 수식관계가 모호하거나 전문용어의 번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관세율표와 해설서를 대조함으로써 쟁점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제1104호 해설 (3)이 그 예다. 일본 세관이 공개한 해당 해설은 ① 껍질을 제거한 곡립과 ② 과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가공한 곡립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문 해설의 "과피를 제거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검토할 때 유용한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일본어 해설 자체를 국내의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의 해석 쟁점에 있어 직접적인 참고가 되는 것이다.

제1104호 일본의 HS 해설서

일문 해설서	殻を除去した穀粒又は果皮（殻の内側の皮）を全部又は部分的に除去するためにその他の加工をした穀粒。
국문 해설서	① 껍질을 제거한 곡립 또는 ② 과피(껍질의 안쪽 껍질)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가가공을 한 곡립

외국자료를 검토하는 실익은 그 결론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HS 문언에 관한 국내의 해석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체계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대상 판결은 **과피가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겉껍질을 제거한 엠머밀을 제100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관세청은 껍질과 과피를 구분하는 관세율표의 용어, 탈곡 이후의 껍질 제거 공정, 곡물의 상태와 거래 서류 등을 종합해 쟁점물품을 제1104.29-9000호에 분류했다.

이 사건은 품목분류에서 번역된 국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보여준다. 원문이 구별하는 '껍질'과 '과피'를 국문 표현만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 특정 문장의 수식관계를 근거로 분류요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HS 원문을 확인하고 다른나라의 관세율표·해설서 및 분류사례를 대조하는 작업은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분류체계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토방법이다.

즉석 인화사진기의 품목분류

제9006호와 제8525호 사이에 선 즉석 사진기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Ⅰ. 포토부스(photo booth), 또 하나의 K-콘텐츠

서울 홍대와 성수동 거리를 걷다 보면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셀프사진관'이 눈에 띈다.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좁은 부스에 들어가 소품을 고르고 포즈를 바꿔가며 네 컷의 사진을 찍는다. 몇 분 뒤 출력구에서 세로로 긴 사진 띠가 나온다. 이른바 '인생○컷'이다. 90년대 말 잠시 유행했다가 초라하게 시들어갔던 추억의 스티커 사진의 완벽한 재탄생이다.

소품과 포즈를 바꿔가며 촬영하는 포토부스



출처: AI 생성 이미지

포토부스(photo booth)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캐비닛형 포토부스의 원형은 1925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나타났다. 러시아 출신 이민자 아나톨 조세포(Anatol Josepho)가 만든 '포토마톤(Photomaton)'이다. 이 기계는 25센트를 넣으면 약 10분 만에 사진 8장을 촬영·현상·인화해줬다. 설치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설치 후 6개월 동안 28만명이 이용했다.

아나톨 조세포와 포토마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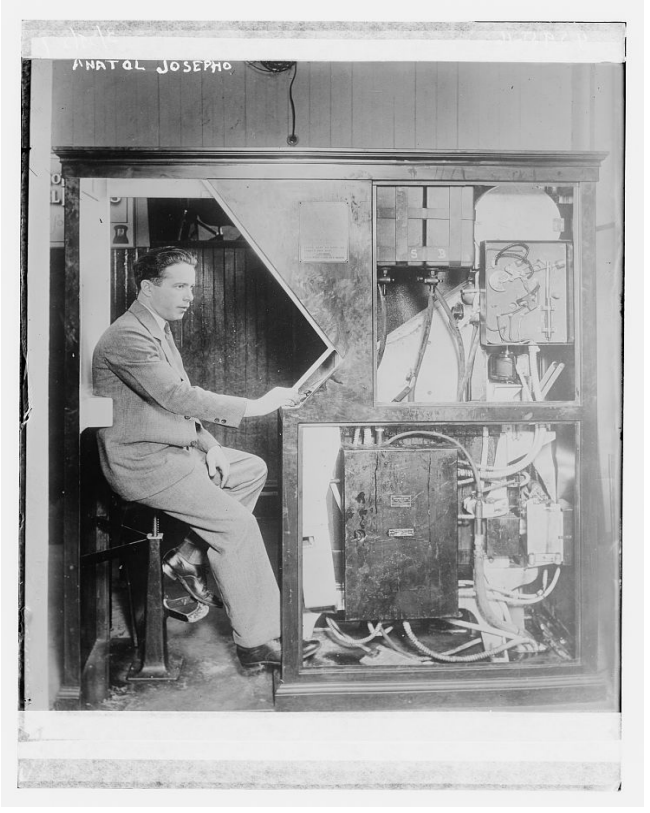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Prints&Photographs Division,
George Grantham Bain Collection(LC-DIG-ggbain-25079)

포토부스는 개인의 은밀한 정체성과 저항의식을 표현하는 서브컬처(Subculture)의 아지트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발명 이후 수십 년간 여권이나 신분증에 붙일 증명사진을 빨리 찍기 위한 다소 따분하고 지루한 가성비 기기로 쓰였다. 영화에서는 당일 발간 신문과 함께 촬영해 생존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생존을 증명하는 장면에 활용된 영화 속 포토부스



출처: AI 생성 이미지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포토부스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갖는다.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기념과 놀이의 공간이 됐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반드시 경험하는 한국문화의 일부가 됐다.

실제로 국내 한 카드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7월 외국인 관광객의 즉석 사진관 이용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같은 기간 PC방(36%)이나 노래방(18%)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외국인들이 K-콘텐츠를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젊은 세대의 일상과 놀이를 직접 따라 하는 방식으로 한국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Ⅱ. 포토부스의 품목분류는?

그렇다면 포토부스의 HS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 제9006호에는 '사진기(photographic camera)'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제9006호 해설서
이 그룹의 카메라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4) 즉석 인화사진기(instant print camera)(휴대형이나 캐비닛형) : 현상가공이 노출 후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단시간에 사진이 완성되는 것. 코인·토큰·자기카드로 작동되는 캐비닛 형의 즉석 인화사진기는 제8476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로 분류한다.

포토부스는 제9006호 해설서에서 언급한 **캐비닛형의 즉석 인화사진기**다. 제9006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물품을 제9006호에 분류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캐비닛형의 즉석 인화사진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품목분류 관점이 숨어 있다.

먼저 **제8476호의 '물품의 자동판매기(Automatic goods-vending machine)' 해당 여부**다.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하며, 여기서 말하는 '벤딩(vending)'이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해 구매자와 기계 간의 금전적 교환을 의미한다.

제8476호에는 물품을 공급해주지만 대가를 수령하는 요소가 없는 기계, 대가를 받고 무언가를 제공해주지만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는 제외된다. 금전적 교환을 통해 사진을 제공해주는 포토부스는 이러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견 제8476호에 분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S는 이 문제에 일찍부터 답을 두었다. **제9006호** 해설서는 즉석 인화사진기를 설명하면서, 노광 후 감광재료가 자동으로 처리돼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된 사진을 얻는 카메라를 이 호에 포함한다. 그리고 **코인·토큰·자기카드로 작동하는 캐비닛형 즉석 인화사진기**(coin-operated cabinet-type instant print cameras)는 **제8476호가 아닌 이 호에 분류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8476호** 해설서 역시 **동전작동식 망원경·카메라·영사기 등 제90류 물품은 제외**하고 있어 포토부스가 제8476호에 분류될 가능성은 이중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초창기 포토부스의 원형인 '포토마톤(Photomaton)'의 관점에서 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다. 포토마톤의 내부를 열어보면 현대의 공장 자동화 라인을 연상케 하는 정교한 기계·화학 장치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사용자가 돈을 넣으면 기계적 셔터가 연동돼 작동하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렌즈, 일정한 사진 화질을 얻기 위해 캐비닛 내부에 단일 광원의 디퓨즈(확산) 조명 시스템, 촬영이 끝난 인화지 스트립을 절단한 후 현상(Developer)→표백(Bleach)→정착(Clearing/Toner)→수세(Washing)→건조(Drying) 공정을 거쳐 배출해주는 현상 및 배출시스템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각각의 구성요소를 품목분류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날로그 사진기와 조명은 제9006호, 현상·배출 시스템은 제9010호의 기능을 각각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토마톤에서 사용하는 감광성 인화지는 제3702호나 제3703호에 분류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같이 **여러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이뤄진 포토마톤을 복합기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단위기계로 볼 것인가?** 이 물품은 구성상 복합기계의 요건과 기능단위기계의 요건을 모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에서 복합기계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기가 결합해 하나의 몸체를 이룬 것을 말한다. 포토마톤은 외견상 하나의 캐비닛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명확히 둘 또는 세 가지 이종(異種) 기계군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복합체다.

복합기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포토마톤의 주기능은 카메라로 보는 것이 명확하다. 아무리 훌륭한 현상·건조 장치가 있더라도, 피사체를 광학적으로 포착하는 카메라가 없다면 뒤이어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즉, 이 기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인물의 사진을 찍는 것'이며, 현상과 건조는 촬영이라는 주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종속적(부수적) 절차에 불과하다.

관세율표에서 기능단위기계란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 및 제90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포토마톤은 **사진촬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된 기기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이므로 기능단위기계의 요건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포토마톤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내는 궁극의 기능은 '빛을 쪼인 감광 재료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실물 사진 스트립으로 가공·완성하는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 포토마톤이 나온 1925년 당시에도 사진기는 이미 세상에 흔하게 존재했다. 포토마톤이 그 시대의 대중에게 준 진짜 충격은 사진을 찍어준다는 사실이 아니라, 원래라면 전문가가 어두운 방(암실)에서 약품을 섞어가며 수작업으로 하던 '현상, 표백, 정착, 건조'라는 암실 프로세스를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공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 장치는 '카메라가 결합한 초소형 자동 현상 장치'에 가까우며, 이는 사진의 현상·인화 및 암실용 장비를 다루는 제9010호의 본질에 훨씬 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토마톤이 지금 시대에 처음 발명됐다면 여러 가지 품목분류 쟁점을 낳았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HS는 이러한 물품을 제9006호에 포함시키도록 정리했다.

Ⅲ. 감광성 재료에서 이미지센서로 - 디지털 포토부스의 문제

'인생○컷'과 같은 오늘날의 포토부스는 겉모습만 옛 포토부스를 닮았을 뿐, 내부는 전혀 다른 기계다. 이미지센서를 갖춘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내장 컴퓨터가 화면 안내·프레임 합성·보정을 처리한다. 출력은 대개 염료승화(열전사) 방식의 프린터가 맡고, 여기에 조명과 결제장치가 하나의 캐비닛에 결합된다. **부스 어디에도 빛에 반응해 화학적으로 변하는 감광재료는 없다.**

이 변화는 품목분류에서 결정적이다. 제9006호 해설서는 사진기를 필름·건판·인화지에 도포된 화학물질(예: 할로겐화은)이 광학계의 상에 노광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기로 설명한다. 그리고 같은 해설서의 제외 규정은 디지털 카메라를 명시적으로 제8525호로 분류한다. 제8525호의 호 용어 역시 '디지털 카메라'를 직접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인용한 제9006호 해설서 (I)-(4)에서 예시한 '캐비닛형 즉석 인화사진기'도 이 정의의 틀 안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해설서가 상정한 것은 감광 인화지를 노광하고 그 자리에서 현상하는 아날로그 부스다. 이미지센서로 찍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디지털 부스는 제9006호의 전제에서 벗어난다. 감광성 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료를 현상, 인화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제9010호 또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디지털 포토부스가 제90류를 벗어나면 흥미로운 결과가 생긴다. 제8476호 해설서의 '동전작동식 카메라(제90류)' 제외와 제16부 주 제1호 (m)의 차단막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포토부스는 **제16부** 안에서 **여러 기능을 가진 복합기계**로 돌아오고,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따져야 할 것이다.

주로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호, 인쇄물 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프린터가 분류되는 제8443호, 상품(사진)을 유상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제8476호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물품의 본질을 이루는 기능은 촬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상은 미리 채워 둔 상품이 아니라, 부스 안의 조명과 카메라가 만들어 낸 자신의 이미지다. 프린터는 그 이미지를 종이에 옮기는 출력 수단이고, 결제장치는 이용을 허가하는 부속장치에 가깝다. 최근에는 인화물과 함께 QR코드로 원본 이미지 파일과 촬영 영상을 내려받게 하는 부스도 흔한데, 이는 출력물이 결과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8476호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 100년 전 미국 수입자가 그랬듯, 돈을 받고 사진을 내준다는 외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판매기의 본질은 상품의 공급에 있고, 포토부

스의 결과물은 촬영 행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포토부스가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이미지의 촬영이다. 따라서 디지털 포토부스는 디지털 카메라로서 제8525호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논리적 전개를 거칠 필요도 없이, 전통적인 방식의 감광매체를 사용하는 광학식 카메라는 제9006호에, 감광매체 없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메라는 제8525호에 각각 분류된다는 근거에 따라 아날로그 포토부스는 제9006호에, 디지털 포토부스는 제8525호에 분류된다는 간단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아직 국제적인 품목분류 관행으로 정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U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으로는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을 내장한 포토부스를 제8476호, 제8525호, 제9006호에 분류한 사례가 아직 혼재돼 있다.

1. EU 품목분류 사례 ① 제8476호(스웨덴)

참조번호	SETIL 2014-2770
시행일자	2014년 7월 4일
결정 세번	847689
물품 설명	Photo Booth reportedly consisting among others of camcorder, computer, printer, monitor, lighting and cabin. **The camcorder is equipped with a CCD sensor,** and has a resolution of 1 megapixel. The camera has video output signal and power. The computer is equipped with, among other things, a USB port, an analog video input and a CD-ROM reader. The printer has a maximum resolution of 300 dpi. The dispenser is designed to be used for recording still images and video images equipped with a device that accepts payment. Photo booth has the dimensions 873.7x2065x1607.8mm (WxHxL) and weight 363kg

2. EU 품목분류 사례 ② 제8525호(프랑스)

참조번호	FR-BTI-2019-09887
시행일자	2019년 5월 21일
결정 세번	85258030
물품 설명	Photo booth cabin, self-service and pay, delivering identity photographs and portrait and mini-portrait photographs. The cabin includes a **digital photographic system,** a thermal sublimation printing system, a central unit, a non-touch screen, a customer interface with buttons, an LED lighting system or neon lights (depending on the version), a seat, a

	payment device by coins, banknotes or bank card (depending on the version) and optional LED lighting. The cabin is suitable for disabled users. Cab dimensions (widthxdepthxheight): 150x106x192cm (without LED signage) / 150x106x218 cm (with LED signage), weight: 340kg

3. EU 품목분류 사례 ③ - 제9006호(프랑스)

참조번호	FR-BTI-2026-03787
시행일자	2026년 8월 13일
결정 세번	90064000
물품 설명	The product is a self-service, pay-per-use photo booththat provides ID, fun, or portrait photos. The booth includes a digital photography system, a dye-sublimation printing system, a central processing unit, a touchscreen control panel, LED lighting, a seat, a payment system accepting coins, bills, or credit cards (depending on the version), and optional LED-lit signage. Dimensions: 150x75x192cm (without LED signage) - 380kg 150x75x218cm (with LED signage) - 400kg

Ⅳ. 손 안의 포토부스 – 휴대형 즉석 인화사진기의 문제

앞서 언급한 제9006호 해설서에서는 즉석 사진기의 역사에서 포토부스의 짝이 되는 휴대형의 즉석 인화사진기까지 예시하고 있다. 흔히 '폴라로이드'라고 불리는 기기다.

전통적인 폴라로이드 사진기는 포토마톤과 마찬가지로 감광성 재료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감광성 필름과 인화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실상 필름과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 인화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당연히 제9006호에 분류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디지털 포토부스와 마찬가지로 휴대형 즉석 사진기 또한 감광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방식의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의 구성을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와 같이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센서, 찍은 사진 데이터를 처리하고, 내장 메모리나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하며, 프린터 헤드로 전송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부, 감광 재료 대신 열(Heat)을 제어해 종이에 이미지를 표현하는 인쇄 엔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휴대형의 디지털 즉석 인화사진기를 프린터가 결합된 디지털 카메라로 볼 것인지, 반대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디바이스가 결합된 초소형의 프린터로 볼 것인

지에 따라 제16부 내에서 경합하는 호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제9006호에서 제외돼야 함은 명확해 보인다.

Ⅴ. 맺음말

결국 **휴대용이든 캐비닛형이든, 이미지센서로 촬영하는 즉석 사진기는 감광성 필름이나 감광성 인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9006호가 상정한 아날로그 즉석 인화사진기와 원리를 달리한다**. 이들을 제9006호에 담는 것은 "즉석에서 사진이 나온다"는 외관에 기댄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제9006호 해설서가 '코인 작동식 캐비닛형 즉석 인화사진기'를 명시한 것은, 포토부스가 감광 인화지를 노광하고 현상하던 시대에는 정확한 서술이었다. 그러나 사진의 원리가 화학에서 전자로 바뀐 지금, 같은 문언이 오히려 분류의 혼선을 낳고 있다. 해설서는 아날로그 부스를 염두에 뒀는데, 실무는 그 문언을 디지털 부스에까지 넓혀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9006호 해설서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카메라를 폭넓게 예시하고 있는 반면, 제8525호 해설서는 디지털 카메라와 제90류 카메라의 원리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시장에 존재하는 발전된 형태의 제품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원리를 채용한 기기에 대한 예시는 거의 없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 나라의 분류 결정만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한국식 포토부스가 수십 개국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같은 물품이 나라마다 제9006호, 제8525호, 제8476호로 갈리는 것은 HS가 지향하는 통일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휴대용 디지털·하이브리드 즉석 카메라도 사정은 같다.

따라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관련된 HS 해설서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채용한 다양한 카메라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예시하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석 사진기의 분류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즉석 인화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원리(감광인가, 이미지센서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꽃핀 포토부스 문화가 세계로 뻗어 가는 지금, 그 품목분류의 기준을 세우는 논의에도 한국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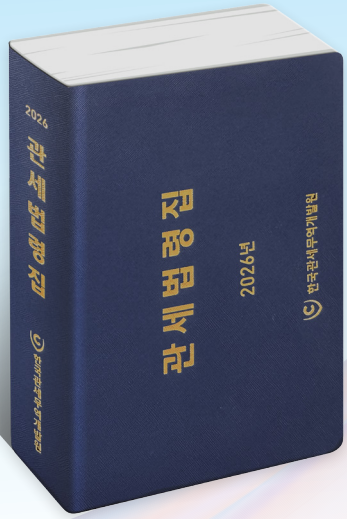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